연구 자료

#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개선방향

## 최 세 균\*

- 1. 머리말
- 2.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과 위장반입 문제
- 3.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의 의의
- 4.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방향

### 1. 머리말

세계 경제는 WTO의 기능 강화를 계기로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주의의 심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WTO 체제의 강화 속에서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등 지역주의의 심화가 계속되고있다. 이러한 각국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화는 다같이 상품의 국적을 표시하고 증명하는 국제적 원산지 규정의 설정과 적용의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농림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는 UR 협상의 타 결과 WTO의 출범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UR 협상에서 한국은 쌀을 제외한 모든 농림수산물에 대하여 관세 이외의 수입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제 그어느 때보다도 외국 농림수산물을 대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제품의 다양화로소비자들은 구매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상표 또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구매 행위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시에 원산지 증명 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원산지표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어떤 상품의 생산국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밖에 일반적 무역 정책 시행, 무역 관련 통계의 작성, 수입 수 량제한 조치의 시행, 반덤핑 제도의 시행, 관세환급 등의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도 원산지 증명제도는 필수적이다.

<sup>\*</sup> 부연구위원

지역주의의 확산은 역내 국가간의 각종 특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혜 조치는 회원국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교역 상품의 국적을 확인해야하는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밖에 미국 등 선진국들이 특정(지역)국가들에 대해서 관세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도 원산지증명이 요구된다.

원산지증명제도는 동식물 병해충의 국제 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외국으로부터의 동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병해충 이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수 입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 국산 호두와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 다. 이는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입자유 화조치나 관세 수준에 관계없이 동식물 방역 법상 중국으로부터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 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와 같이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조치들은 소비자에게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외에 특혜무역제도나 비특혜관세제도의 적용, 동식물 병해충 확산 방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교역은 국가간 의 교역이 아닌 내국간 교역이라는 점에서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내국간의 거래라는 점을 악용한 제3국 상품의 면세수입, 수입금지 지 역의 농림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 입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 한 문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 여 구매 행위를 왜곡시키고 면세 수입으로 의한 수입 증대는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입히 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꿀벌을 통해 국내에 확산된 가시응애는 국내 양봉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쇠고기가 밀수입되는 사례가 있고, 특정 병해충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가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지 오래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의 병해충은 완전히 구제하기도 어렵고 구제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교역에 있어서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취급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 결하기 힘든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제3국 상품의 북한산으로의 위장 반입은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 남북한간의 경협활성화를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한 수출에 있어서 관세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하에서라면 북한은 제3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 등 제3국의 자가 상품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될경우 북한 상품의 대남한 수출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남북한간의 경협은 감소하게 된다.이는 결국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경제 발전을 저해하여 통일의 지연과 통일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교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위 장 반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교역을 내국간 거 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악용한 제3국 상품 의 북한산으로의 위장 반입이 여러 가지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거래에 있어서 원산지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반 입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 로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산지증명제도를 실시할 필요성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원산지증명 제도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 어야 할 시점이다.

# 2.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과 위장 반입 문제

### 2.1. 북한산 농립수산물 반입 현황

북한은 1993년말 노동당 중앙위 제6기 2 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1987-9 3)의 실패를 시인하고 1994년부터 3년간(1 994-96)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한 바 있다. 북한은 이 기간동안에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제일주의, 생필품 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공업 제일주의, 외 화획득을 위한 무역제일주의를 중점 경제정 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필품부족, 식량난, 외 화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부족은 최근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도움 을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해외로부터 공급받 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으 로는 외화의 부족으로 구매력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은 장기적

표 1 북한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반입 현황

단위: 천 \$, 톤

1990년			1991년			1992년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도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감 자	12,547	4,195	감 7	1,776	214	냉동명태	7,514	2,826
냉동홍어	102	246	땅 흥	150	203	감 자	6,259	1,882
기 타		198	원 5	6,684	532	호 두	1,008	1.781
			(CBM	.		냉장명태	1,267	1,393
			버섯 🕯	÷	382	고사리류	277	811
			डे -	297	424	건도토리	1,256	505
			고사	120	228	버섯류	71	461
		i	냉동홍c	391	917	냉동갈치	160	375
		•	냉동명티	4,239	1.718	박하기름	33	118
			기 8	}	486	냉동홍어	30	105
				ł		기 타	1	700
한 약 재	206	684	한약기	621	2,583	한약재	1,688	4,563
계		5,323	계		7.687	계		15,520

(표 1 계속)

1993년				1994년		1995년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품 목	수 량	금 액
호두	2,145	3,627	냉동명태	2,015	615	호 두	2,518	4,806
고사리류 424 1,653		냉동조기	150	805	고구마전분	252	144	
건도토리	건도토리 1,510 602		냉동꽂게	144	374	땅 콩	1,505	1,189
박하기름	69	346	호 두	3,110	6,349	팥	1,064	709
생 백 합	220	278	버섯류	51	605	녹 두	137	172
냉동명태	627	231	고사리류	244	843	참 깨	133	158
피 율 무	205	229	로얄제리	14	1,104	메 밀	475	144
버섯류	39	185	낙 화 생	528	452	둘 깨	930	932
냉장명태	132	130	북 어	568	690	사 과	844	373
원 목	1,012	112	들 깨	119	114	도토리	767	342
(CBM)			도토리	310	149	수 산 물	1,028	2,383
녹 두	150	112	기 타		539	기 타		2,155
기 타		763		!				
한 약 재	744	2,009	한 약 재	1,085	2,145	한 약 재		6,139
			녹 용	1	400	녹 용	4.8	1,377
			반 하	12	42	사 향	0.2	3,001
			복 령	175	524	복 령	242	499
			창 출	308	250	창 출	296	361
		}	지 황	234	487	지 황	523	296
			시 호	16	42	목 단	90	198
			만 삼	3	10	시 호	50	136
			백 출	274	356	산 약	46	100
			오미자	7	16	백 출	42	81
		}	음 양 곽	55	18	오미자	18	38
						음 양 곽	40	35
					,	행 인	11	17
계		20,376	계		14,784	계		19,646

<sup>\* 1995</sup>년은 11월 말까지의 반입 실적임.

자료: 통일원의 자료에서 재작성

으로 북한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식 량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통일 전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간의 경협 활성화 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남북한간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역은 1988년부터 대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한 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최근의 농림수산부문 교역 실적을 보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출된 농림수산물은 금액으로 볼 때 1992년 1,552만 달러, 19 93년 2,038만 달러, 1994년에는 1,478만 달러, 그리고 1995년(11월까지)에는 약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 남한 전체 상품반출액의 10% 수준이다. 대 표적인 반출 농산물은 감자, 한약재, 호두, 땅콩, 버섯류, 건고추, 도토리, 고사리, 들 깨,녹두 등이며, 수산물은 냉동 및 냉장 명 태, 냉동조기, 북어, 냉동꽃게, 생백합, 염장 바지락 등이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0 년 이후의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실적을 보면 〈표 1〉과 같다. 교역 초기인 1990년 에는 북한의 감자가 1만 3천톤 반입되어 교 역액으로 볼 때 전체 농림수산물 반입의 80 %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산 감자는 품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이후 반 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약재 반입액 은 1991년 260만 달러에서 1995년 61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산물 반입은 명태, 조 기, 꽃게 등 연근해 수산물들을 중심으로 증 가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농림수산물 반 입은 교역 규모의 증가와 품목의 다양화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반입 통관한 남 한산 농림수산물은 거의 없다. 북한이 남한 으로 반출한 것에 비하면 거래규모와 품목에 있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 한이 남한으로부터 반입한 대표적인 농림수 산물은 쌀(5,000톤-1991년, 150,100톤-1995년), 마늘(1,000톤, 1992년), 마른김 (1.126속, 1993년), 콩기름(50톤, 1994 년), 감귤(10톤,1994년), 냉동오징어(100 톤, 1994년), 밀가루(2,100톤, 1995년) 등이다.

이렇게 남한의 농림수산물에 대한 북한의 반입실적이 부진한 것은 남북한간의 거래에

있어서의 정치적, 제도적 요인 등 경제외적 요인 이외에 남한의 농림수산물 생산이 대부 분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가격 또한 국제적 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북한의 외환 부족 과 남한의 농림수산물 반입에 대응할 반출품 부족도 남북한 농림수산부문 교역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값싼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북한산으로의 위장반 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남북한 농림수산부문 교역은 보다 증대될 수 있다.

### 2.2. 남북한 경협과 위장반입 문제

북한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농림수산물 가운데 남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은 북한의 제3국과의 거래 조건에 관계없이 일단 남한 으로의 반입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농 림수산물은 수산물(대구, 연어, 송어, 게, 대합, 넙치, 가자미, 갯지렁이, 바지락, 성 게, 청어, 정어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농산물로는 사과, 토마토, 양배추, 전 분, 잎담배, 한약재, 송이버섯, 채소, 생사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규모는 크지 않은 실 정이다. 특히 북한의 수산물 수출은 규모가 크고 품목이 다양하여 수산부문의 대북한 교 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남한의 만성적 공급부족 품목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녹두, 팥 등의 잡곡류 와 고사리, 한약재, 호두, 명태 등 기존의 반 입 품목들은 교류가능 품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교역은 이 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 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는 정치적 상황 이외에도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생산체제, 중국산 저가 농림수산물의 남한 시장 점유율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농업은 식량생산 위주로 계획생산 체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필요 로 하는 품목인 콩, 팥, 녹두, 메밀 등 잡곡 류와 한약재 등 특용작물의 생산이 극히 제 한되어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할 때 북 한이 쌀, 옥수수, 감자 등 주곡을 위주로 하 는 생산체제는 특용작물과 식량을 교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농산물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잡곡류, 한약재 등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중국산 농림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들어 올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 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3국 농림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남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내국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데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이익을 목적으로 위장반입을 시도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상품을 수입하기위해서이다. 동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중국산 호두나 쇠고기를 북한산으로 위장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이때 수입에 따른 판매 차액은 매우 크다. 이러한 시세 차익이

위장반입의 유인이 되고 있다. 세번째 이유는 일부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쿼타량을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경우 수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산 농림수산물은 일반적으로 북한산보다 값이 싸며 이러한 농림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면 북한산의 가격 또는 국내 농산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경제적 유인들에 의해 제3국 농림수산물의북한산으로의 위장반입 가능성은 증가하고있다.

최근 중국산 농림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 장반입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 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구마당면: 북한과 교역하는 당사자들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고구마당면 생산 공장이 없어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남한으로 수입된 당면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연길,도문,청진을 거쳐 북한산으로 둔갑되고있음.
- 땅콩: 대부분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것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 호두: 북한산 호두의 반입량은 1994년 과 1995년도에 각각 3천톤, 2천5백톤을 넘고 있음. 이는 북한의 생산 능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호두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추정됨.
- 한약재: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이른다 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예, 지황).
- 그밖에 고사리, 버섯 등의 임산부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도 위장반입되는 경우 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 계의 의견임.

# 3.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의 의의

남한에 있어서는 농업노동력의 부족, 채산 성의 악화 등으로 밭작물 특히 잡곡류의 생 산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소득의 증가와 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수요는 오 히려 증가하고 있어 잡곡류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농작물의 경우 수요 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 고 있다. 반면 북한은 밭이 많고 농업노동력 이 풍부하여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물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잡곡류의 증산 가능성은 높다 고 볼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효로 각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향으 로 바뀌고 있으며, 환경 오염과 어자원의 남 획 등으로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자원의 고갈이 심하지 않은 반면 유효수요 는 적어 수산분야의 남북한간 상호 협력 가 능성은 높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교역 가능성과 남북한의 식량자급도 등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비한 농림수산부문 교역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낙후된 북한 지역의 농림수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시 적인 식량의 지원은 농업생산성 향상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식량난을 겪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농업생산성 저하와 함께 외화의 부족 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식량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도 남북한간의 농업부문 교 역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구매력 향상에 역점 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타개를 위해서 가 장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남한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간의 경협 활성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할 때 농림수산부문의 남북한간 경협 활 성화를 통한 북한의 경제재건과 통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 나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교역은 크게 활 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산 등 저가의 농 림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위장반입은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경협 활성화에 저 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교란 시키고 외국 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피 해를 입히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남북한간의 농림수산부문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와 정 치적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제 외적 문제는 경제논리와는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남 북한간의 농림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산지증명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실현된다면 다음 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경협활성화를 들 수 있다. 남북한간의 원산지증명제도가 효력을 발생 할 경우 지금까지 북한산으로 위장되어 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농림수산 물의 반입이 감소하는 반면 북한산의 반입이 증가하여 물자의 교역은 물론 인적교류 또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고 통일비용 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발표하는 남북한간의 교역 내용이 과장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고 있다는 의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 당국과 업자들 간의 속임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원산지증명제도의 실시는 이러한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있다.

셋째, 국내 시장교란 요인을 제거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산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방위세가면제되어 정상적인 수입품에 비해 큰 가격차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값이 싼 중국산 농림수산물이 관세와 기타 세금의 부를 피해위장 수입될 경우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크다. 또한 소비자들의 경우 원산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원산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평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교란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에 대한 원

산지표시 및 확인 절차의 확립은 이러한 시 장교란 요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다.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경우면세혜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위장 반입이 감소할 경우 북한산의 수입은 증가할 수 있으나 북한산보다 가격이 싼 중국산의 수입은 감소하여 생산자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 4.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방향

### 4.1.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입 관련 제도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 법률의시행령으로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는 교역(반입과 반출)과 남북한 주민, 법인, 단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제4239호, 1990년 8월 1일 제정). 이와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교역당사자: 남북한간의 교역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또는 무역업의 등록을 한자로 한 정하고 있음(제12조).

나. 교역의 승인: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 거 래형태, 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는 통일원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제13조).

다. 교역대상물품의 구분: 반출입 물품은 자 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금지품목으로 구 분되며, 통일원장관은 이러한 품목 구분 내 용과 제한승인품목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 인 절차에 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공고하여야 함(제14 조).

라. 검역: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 항 공기, 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검역법 6조-28조, 33조-35조에 준하나 19조와 20조 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생 략될 수 있음(제23조).

마. 세제: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방위세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의 적용을 받지 않음. 기타 조세 의 부과, 징수, 감면 및 환급 등은 관련 법 률의 적용 대상임(제26조).

바. 원산지 확인: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 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정함(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러한 규정 가운데 원산지증명과 직접 관 련된 부분은 시행령 제 50조 제 2항으로 이 규정에 의해 세관 및 검역 당국은 북한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의 진위는 북한 당국의 확인이 없는 한 남한 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 들의 의견이다.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 들은 또한 북한산이 아니라고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항해

일지 등 추가적인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있 으나 이들 서류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 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정책협의회, 1996. 2. 27).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의 교 역이 기타국들과의 교역과 달리 공식적인 국 가 기관간의 접촉에 의해 교역에 관한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2.2. 개선방향

북한산 농림수산물의 반입신고시에는 원 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원산지표시 등 구체적인 확인사항은 시행에 있어서 실효 성이 미흡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북한 당국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의해 북한산과 제3국산을 구 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 한산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가 실효를 거두 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북한 당국이 발 행한 것이라는 확인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측과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서는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 제도가 북한측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측에 대한 이러 한 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북한측과의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산지증명제도 개선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관계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

급내용을 정기적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통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되는 것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하여 언제라도 확 인이 가능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잦은 접 촉을 수반하게 되어 남북한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둘째, 남북한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규격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하에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련번호와 동일 규격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위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조의 가능성과이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남북한간 주요 농림수산물 교역을 담당할 수 있는 남북합작무역회사의 설립을 통한 교역창구의 단순화를 통해 위장 반입을 방지하는 방안이 있다. 이 때 합작회사가 취 급할 수 있는 교역 품목은 가격차가 커 반입 에 따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반입제한 승 인품목에 국한하여 민간부문의 교역을 위축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이 계획 생산체제를 유지하는 한 상호 신뢰성 있는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반출입 물량을 사전에 조정하고 계약에 의해 교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필 요성 이외에도 농산물의 교역을 활성화시키 는 방안으로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에서는 국내산 농림수산물의 경 우 227개 품목에 대해 생산지를 시·군 단 위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5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료가 혼합되어 들어갈 경우에는 그 비율을 표시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북한산에 대하여도 이러한 국내 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의 조화와 통일에 관한 협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남한 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남한 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남한 내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공동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북한의 식량 난과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김운근, 최세균 외. 1994.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연구보고 R3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유남식. 1995.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연구」, 정책연구보고 P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홍열. 1994. 7. "원산지규정",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발행「WTO 출범과 신교역질 서」, pp221-236.